

문서번호	어르신복지과-34239
결재일자	2015.9.16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어르신복지담당	어르신복지과장	교육문화복지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김나정	윤성열	이만형	도일환	김병환	09/16 代김병환
협 조	정무보좌관 기획예산과장 생활보장과장 복지정책과장 법제담당		윤정배 권용대 심진숙 민지선 박기훈		

-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행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-
노인복지기본조례(안)확정 방침



교육문화복지국

어르신복지과

-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행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-

노인복지 기본 조례(안) 확정 방침

최근 어르신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복지 정책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“어르신 행복도시 성북”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I 조례(안) 제정 배경

- 현실 여건에 맞는 종합적 노인복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 정립 요구
→ 현재 운영 중인 「성북구 노인증진에 관한 조례」 규정 미흡
- “어르신 행복도시 성북 구현”을 위한 내실 있는 인프라 구축
→ 정책의 전문성 및 실효성 확보 장치 마련
- 활기찬 노후 보장 및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성 담보
→ 어르신 건강증진, 권익보호 등 다양한 어르신 복지 서비스 규정

II 조례(안) 제정 개요

- 조 례 명 : 어르신 행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
- 조례형식 : 제정
- 조문구성 : 4개장 29개조항
- 추진일정
 - 조례제정(안) 초안 작성 및 부서 협의 : 2015. 6. ~ 2015. 7.
 - 기본방침 수립 : 2015. 8. 7 ~ 8. 13
 - 관련부서 사전 협의 : 2015. 8. 7 ~ 8. 13
 - 부패 및 인권영향평가 : 감사담당관
 - 성별영향평가 : 여성가족과

- 예산수반 재정부담 등 비용추계서 검토 : 기획예산과
- 입법예고 : 2015. 8. 20 ~ 9. 9(소요기간 20일)
- 조례안 확정 방침 : 2015. 9. 15
-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: 2015. 9. 16
-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2015. 9. 23
- 성북구의회(제237회 임시회) 심의 : 2015. 10. 7 ~ 10. 15
- 조례안 공포 : 2015. 11. 5

III

조례(안) 주요 내용

□ 제1장 : 총칙

- 제정목적, 기본이념,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3조)
- 구청장 등의 책무, 시행계획의 수립(안 제4조~제5조)

□ 제2장 노인복지정책

- 노인의 건강증진, 사회·문화 활동의 장려에 관한 규정(안 제6조~제7조)
- 노인일자리 전담기구 설치, 노인복지 시설 지원(안 제8조~제9조)
- 생활환경 편의증진, 권익보호, 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(안 제10조~제12조)
- 노인 학대 예방, 자살예방, 노인의 날 등 운영, 표창(안 제13조제16조)

□ 제3장 어르신 행복도시 자문위원회

- 설치 및 기능, 구성, 임기, 해촉에 관한 사항(안 제17조~제20조)
- 위원장 등의 직무, 회의, 행정 및 실무지원(안 제21조~제23조)

□ 제4장 : 보칙

- 다른 법령 등과 관계, 업무협조, 경비 지원 등(안 제24조~제26조)
- 사무 위탁, 준용, 시행규칙(안 제27조~제29조)

IV

참고사항

- 관계법규 : 「노인복지법」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기타사항
 - 입법예고 : 2015. 8. 20(목) ~ 9. 9(수) 제출의견없음
 - 비용 추계 등 자료 :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
 - 부패/성별 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 - 인권영향평가 결과

권고안	부서반영·미반영
제3조(정의) 1호 ○ “노인”이라 함은 구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“에 노인 연령에 대한 규정 삭제 필요	<미반영>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개별법으로 이 조례안은 수혜의 범위를 일반노인을 두고 있어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한 별도 규정은 불 필요함
제18조(구성) 1항 ○ 위원회는 성별을 특정 성에 한정되지 않도록 명확한 규정 필요	<반영>
제20조(해촉) 4호 ○ 위원의 해촉에 대한 정확한 사유 규정	<반영>

- 붙임 1.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행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(안) 1부.
 2.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. 끝.